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		배포일시	2021. 9. 29.(수) / 총 3매(본문3)		
담당 부서	물류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진철, 사무관 김병채, 이경섭 (☎ (044) 201-4017, 4021)		
보 도 일 시		2021년 9월 30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30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	

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“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(TF)”을 운영하고,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.
-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*,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
 - * 불법증차의 주요 수법인 대폐차 문서 위·변조 등의 방지를 위한 “대폐차 신고·관리시스템” 구축('12), 대폐차 신고기한 대폭 단축(6개월→15일), 불법증차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(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→ 감차) 등
 -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“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(TF)”을 구성하여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.
 - 이번 조사에서는 '17.6월 이후*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 조사하고,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.
 - * '12년, '15년, '17년 3차례에 걸쳐 TF를 구성, '17.6월까지 허가받은 공급제한 화물차에 대해 확인 완료

□ “불법증차 조사 TF”에서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*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.

*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7조제1호

: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○ 또한, “불법증차 조사 TF”에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.

○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.(☎ 1899-2793)

□ 또한,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,859개 업체에 대한 “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”도 실시한다.

○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계획으로,

○ 우선,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, 나머지 1,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'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.

○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, 휴게시간 준수 여부, 운행기록장치(DTG) 장착·정상작동 여부 등으로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뿐만 아니라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교통안전법」에 따른 화물차의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,

○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, 과징금·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이진철 물류산업과장은 “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 '04년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업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,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근절하도록 할 것”이라면서,
- “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화물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김병채 사무관(☎ 044-201-401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